

# PL(제조물책임)과 안전의식의 변화



김 주 흥  
한국PL센터 책임전문위원

## 1. 서론

현대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물건들이 만들어져 홍수처럼 우리 앞에 쏟아져 나온다. 문명의 이기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거론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안전이 나에게서 아주 멀리 있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의 개념이 도입되면 안전이 우리 생활속 깊숙이 들어와 한층 더 높은 안전의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소비자가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과연 제조물책임이란 무엇이 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 2. PL법의 성립과정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 많은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점차 증가한 선진국에서부터 소비자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따라서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당해 제조물을 공급

한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엄격히 묻게 되었다.

### 2.1 PL법의 국제적 동향

미국의 경우 이미 1960년대부터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을 유통시켜서는 안된다는 안전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1962년 3월에 케네디 대통령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고서(Consumer Bill of Right)를 통하여 소비자는 알권리, 안전할 권리, 선택할 권리, 고충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1963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에서 제품의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을 강조한 엄격책임주의가 적용된 Greenman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제조자는 제품을 생산할 때 안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제조물책임모델법(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과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이 제정되면서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도산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려다 보니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보험 수배가 곤란해지는 등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무과실책임에 입

<표 1> 국가간 PL법의 특성 비교

구분	미 국	유 럽	일 본	한 국
입법성향	1972년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제정으로 본격화	대부분 80년대 말부터 본격시행	94. 6. 22 입법 95. 7. 1 시행	01. 1. 12 공포 02. 7. 1 시행예정
PL법리	엄격책임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개발위험의 항변	제품유통 후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요함	제품유통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품결함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	좌 동	좌 동
시효	주별로 상이함	소멸시효 :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 3년 제소기간 : 제조물공급으로부터 10년	좌 동	좌 동

각한 PL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대에는 개발도상국 까지도 엄격책임주의에 입각한 PL법이 제정되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관련소송에서 판결금액이 거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약 30개국에서 PL법을 시행하고 있어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 2.2 국내 PL법의 추진 경위

국내에서는 이미 1982년 2월에 국회의원 26명의 발의로 무과실책임을 골자로 하는 PL법 시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경제·사회적 여건상 시기상조로 보류되었다. 그 후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PL법을 입법코자 여러 차례 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업진흥청에서 입법 타당성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1998년 10월에는 법조계,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소·보·원에 설치하고 입법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관련기관이 지속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1999년 3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회 상정을 결정하고 그 해 말에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하여 PL법이 법률 제6109호로 2000년 1월 12일 제정·공포되었고 2년 이상의 유예를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국가간 PL법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 3. PL법의 주요 내용

PL법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는 특별법이다.

제1조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PL법은 제품에 결함이 있고 사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결함과 손해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고 손해가 사고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 과실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제조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웠다. 즉, 이제까지 민법으로는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 내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제조자보다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의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억울하지만 포기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제 PL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며, 제조자가 그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 내지 못하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그만큼 제조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로,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예상되는 사례로 워크맨을 장기간 사용하던 중에 점점 커가 난청이 되는 경우, 자동 개폐되는 문에 유아가 목이 끼어 질식사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 중 본넷트가 열려 시야를 막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유아가 몸을 뒤척일 때에 유모차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치는 경우, 화장품에 의하여 피부병이 생긴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로,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예상되는 사례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중 핸들이 꺾여 큰 부상을 입는 경우, 자전거를 타던 중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축이 부러져 전복되어 다치는 경우, 통조림에 이물질로 인하여 병에 걸리는 경우, 전산실의 에어컨이 돌연 기능이 정지해 온도가 올라 데이터가 손상된 경우, 구입한 햄버거에 혼입되어 있는 금속이나 뼈에 입을 찢려 부상을 입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로,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예상되는 사례로는 향수를 양초에 뿌렸는데 돌연 발화하여 어린이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어린이가 베이비 오일을 잘못 마셔 뇌 장해를 일으킨 경우, 라이터를 차안에 방치했는데 폭발해 부상을 입은 경우, 윈트겐 사용 중 X선이 누출되어 성불능이 된 경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제조업자는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면책항목도 있다.

제4조에서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므로써 발생한 사실」,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을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히 실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법의 적용시기는 이 법이 시행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여기에서 “공급”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하여 최초로 자기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자에게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PL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PL법이 시행되면 일단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고려사항이 많아 지므로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현실을 정면 돌파한다는 적극성을 보일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4.1 PL법의 부정적 영향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결함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제품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클레임 및 소송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PL법이 시행되면 제조자 측에서 그 제조물에 결함이 없음 입증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개발·구매·생산·검사·판매·AS·리콜 등에서 비용의 상승이 이루어져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에 있어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엄청난 인력자원의 낭비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신제품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개발·생산·판매에 신중을 기하다 보면 시장출하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수주가 지연되는 등 시장정책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L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상에 대한 피해보상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인한 손해보다 더욱 커다란 문제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4.2 PL법의 긍정적 영향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 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측

면도 있다.

첫째,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결함제품으로 인해 배상금을 지불하기 보다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데 비용이 덜 든다는 판단하에 더욱 안전성 향상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결국 제품의 안전성이 높아진다.


둘째, 소비자를 보호하는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한다. PL법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에 대비하여 완벽한 제품을 목표로 개발·설계·제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히 그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만족을 생각하게 되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상에 입각하여 기업을 경영하게 된다.

셋째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제는 완벽하고 안전하면서 품질까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므로 기업의 체질을 새롭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결국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4.3 PL법의 대응 방안

이제는 제품안전이 기업경영의 중요 관심사항이 되므로 완벽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진 다양한 소비자들이 제조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래 의도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도되지 않은 사용과정에서도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사용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조물책임 사전예방대책(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LP)과 제조물책임 사후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PLD)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5. 결 론

PL법의 시행에 따라 온 국민의 안전의식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현대 소비자들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면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만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그 과정속에서 성숙된 소비자의식이 싹트며 결국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PL법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안전은 공장내의 위험기계·기구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산업 안전 관계자는 산업재해예방활동에 가일층 만전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부터 산업현장 작업자까지 전사원은 자신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준엄한 최종검수과정이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안전하면서 품질도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야만 한다. 이렇게 소비자를 왕처럼 생각하는 의식의 대전환을 가져온다면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표 2〉 국가간 PL법의 특성 비교

분야	주요 대책	고려 사항
사전 예방대책 (PLP)	설계상의 결함방지대책	-독립적 안전 설계·평가기구 및 제도운영 -안전설계 프로그램 채택
	제조상의 결함방지대책	-협력업체의 결함방지대책 포함
	지시·경고상의 결함방지대책	-보증서상의 결함방지대책 -조립·설치상의 결함방지대책 -사용·소비상의 결함방지대책 -유지·관리상의 결함방지대책 -수리·점검상의 결함방지대책 -폐기단계 결함방지대책
	판매·설치·AS 등의 결함방지대책	-판매행위의 결함방지대책 -유통상의 결함방지대책 -보관상의 결함방지대책
사후 방어대책 (PLD)	클레임처리 체계	-소비자 상담실, 클레임의 FeedBack
	문서의 기록보존관리	-문서보관 규정
	결함제조물 회수대책	-Recall 시스템의 훈련
	소송대응대책	-변호사와 전문가 자문

참조 : www.kplc.or.kr

\* 다음호에는 식품산업을 중심으로한 PL대책을 게재할 계획임.

(법률 제6,109호, 2000.1.12. 공포, 2002.7.1. 시행)

## 제 조 물 책 임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